

# 漁港法개정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지난해 우리 어항업계를 들끓게 하면서 어항인들의 기대와 관심을 잔뜩 끌어들여왔던 어항법개정작업이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소강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이는 물론 그동안 수산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수산청장이 경질되어 업무파악과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탓으로 대부분의 어항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백의 시간이 다소 긴 느낌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지극히 일부이긴 하나 혹시 이같은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어항 개정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시각도 없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일말의 불안감은 그동안 어항법 개정의 추진과정을 살펴 보면 공감이가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행 어항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9년 5월 19일 -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넘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항법이 제정된 이래 이렇게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차례의 손질도 받지 않은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20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실과 괴리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임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지탱해온 것을 보면 어떤 의미로 어항법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왔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어항법 개정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고 중요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항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어항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노파심도 깨끗이 씻을 수 있을 뿐더러, 아울러 어항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대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수산청이 어항법을 개정하기로 작정했던 것은 이같은 현실을 직시한 용기있는 결단이었다. 더욱이 이렇게 시의 적절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수산청이 각계의 의견을 끌고루 수렴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당초 수산청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정부·각

기관을 비롯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한 뒤, 4~5월의 검토과정을 거쳐 6월부터 9월까지 어항법 개정작업에 착수, 10월에 어항법 개정 시안을 작성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작년 7월에 중간보고를 거쳐 정기 국회에 상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산청의 내부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촉박해지고, 또 일부에서는 20년을 기다려 왔던 어항법 개정인데 그렇게 조급히 서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없지 않아 당초 일정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0월말까지 당정협의를 마치고, 11월에 입법예고한 뒤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무회의에 상정, 올 1월에 대통령재가를 받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3당 통합으로 인한 민자당 출범, 개각과 수산청장 경질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진전을

할 수 있도록 어항관리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조문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제1조 목적에 '현행어항법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어촌의 형성은 어항이 존재함으로써 조성되는 것을 인식시키고 어항의 중요성을 확실히 부각시켰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사안 가운데 하나인 어항관리를 행정기관이 아니면 관리를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도 찾아 볼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어항관리문제는 시행령에 수협이 관리대행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 제 5조를 볼 것 같으면 '제 1종 및 제3종 어항은 수산청장이, 제2종 어항은 직할시장·도지사가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임규정에는 시장·도지사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함

**수산청이 어항법을 개정하기로 작정했던 것은 이같은 현실을 직시한 용기있는 결단이었다. 더욱이 이렇게 시의 적절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수산청이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보지 못한 채 시안만 마련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지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단 마련된 어항법 개정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 30조 부칙 2항으로 되어있는 현행 어항법을 제 33조 부칙 4항으로 작성해 놓았다.

이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어항기능의 다양화에 대비한 각종 시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항관리시설의 효율화, 어항정화시설 등을 신설하고 구체화하였다.

둘째, 현행 어항법에서는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기관과 건설부문의 추세를 감안해 개정시안에서는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시설 확대방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셋째, 어항관리에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어항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기능을 수행

으로써 행정기관이 아니면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장차 다소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항만청의 경우 최근 컨테이너 부두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행정의 질적으로 세분화되고 분업화하여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다소 경직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우려되지만 장차 어항관리를 위한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전포석의 의미도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한편 개정안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사업대행'은 민자유치와 관련한 법적 장치를 열어놓은 신설조항으로 큰 관심을 끈다.

이는 민자유치로 개발한 항에 대해서는 항내의 일정구역인 접안시설이라든지 물양장 등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를 국유의 이익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미 철도청 등 일부 국각기관에서 민자역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어떤 의미로 다소 때늦은 감조차 든다.

또 개정안 제11조를 보면 겸업어항시설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는데 이는 어항도 화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금지행위를 법 제27조에 신설해 강화했는데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던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즉, '어항구역안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놓은 법조문 가운데 특히 제4항에 다량의 토석, 오물을 버리거나 어항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5항에 기타 어항의 보존 또는 그 이용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도 명시함으로써 항내에서의 불법적인 이용과 무단사용,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항을 수산업 생

어졌든 대체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항법 개정시안의 주된 흐름은 어항의 개발촉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관리측면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어항을 시설한다 해도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그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관리대행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일이 큰 과제로 떠오른다.

어항인들이 희망하는 것은 가능하면 권위향상과 조직확대, 어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항법에 이를 명문화해 설립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점이다.

더욱이 어항개발촉진을 위해 과감하게 민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이마당에 관리 역시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결 같은 목소리이자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시급한 문제는 이나마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완료되어

**어항인 모두가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내가 꺼야지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겠는가.**

산활동의 중요한 근거지라는 생각을 망각한 채 이를 마구잡이식으로 이용함으로써 관리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비를 들여 보수·보강작업을 해야만 되었기에 국가예산낭비의 측면도 없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의사가 다분히 내포됨에 따라 많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앞서 잠시 언급한 위입규정인 제31조를 좀 더 신축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나 이는 관리 자체문제보다도 관리범위의 문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수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어항업계에서는 지난해 어항협회의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어항관리를 수협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어민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항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면서 위판수수료 가운데에서 최소한 얼마만큼이라도 어항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야 겠다는 어항인 전체의 바람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문화돼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많은 어항인들은 '한 술 밤이 배부르랴' 라는, 심정으로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차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만한 어항법이라도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어항인 모두의 공감할 만한 인내의 시간이 흐른 이상 관계당국도 빠른 시일내에 어항법의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은 일일 듯 싶다.

어항인 모두가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내가 꺼야지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 여름은 어항인 모두의 의지를 모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